

# 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대여금고 예금약관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외환은행 약관을 통합내규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

(구)하나은행 약관을 (구)외환은행 변경약관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
개정 전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~ 제5조 (생략)</b></p> <p><b>제6조 대여금고의 이용</b></p> <p>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 (또는 <u>카드, 지문</u>)를 사용한다. 단,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 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, 지문인식 대여금고는 최초 약정 후 별도의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<b>제7조 이용시간</b></p> <p>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은행의 영업시간 (09:00~16:00)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8조 대여금고의 임의 열람</b></p> <p>① 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</li> <li>2. <u>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</u></li> <li>3. 기타 금고의 수리와 변경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9조 보증금 (생략)</b></p> <p><b>제10조 거래해지사유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	<p><b>제1조 ~ 제5조 (좌동)</b></p> <p><b>제6조 대여금고의 이용</b></p> <p>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 (또는 <u>지문</u>)를 사용한다. 단,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 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, 지문인식 대여 금고는 최초 약정 후 별도의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③ (좌동)</p> <p><b>제7조 이용시간</b></p> <p>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은행의 <u>영업시간</u>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8조 대여금고의 임의 열람</b></p> <p>① 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</li> <li>2. <u>대여금고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경우</u></li> <li>3. 기타 금고의 수리와 변경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(좌동)</p> <p><b>제9조 (좌동)</b></p> <p><b>제10조 거래해지사유</b></p> <p>① ~ ③ (좌동)</p>	<p>(통합내규와 일치_ 카드 문구 삭제)</p> <p>(통합내규와 일치_ 시간 삭제)</p> <p>(문구 구체적 기재)</p>

<p>④ 해지시 임차인이 이용열쇠(카드 포함. 이하 같다)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쇠 및 자물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11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 ~ 제15조 준용</b> (생략)</p>	<p>④ 해지시 임차인은 이용열쇠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쇠 및 자물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11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 ~ 제15조 준용</b> (좌동)</p>	<p>(통합내규와 일치) 카드 문구 삭제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개정 전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보관대상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에 보관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.</u></p> <p>② <u>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위험물질,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2조 계약기간</b></p> <p><u>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하고,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대여금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.</u></p> <p><b>제3조 인감·서명 등 신고</b></p> <p>① <u>거래처는 대여금고에 사용할 인감, 서명,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신고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려고 할 때는 대리인도 신고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은행은 제 1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신고인감 등의 대조.확인 등을 등 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4조 열쇠 또는 카드의 보관 및 사용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열쇠(카드포함, 이하 같다)는 거래처용, 은행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.</u>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</b></p> <p><u>이 약관은 대여금고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으며, 대여금고라 함은 은행에 설치된 금고에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 중 은행이 인정하는 자(이하 "임차인")에게 대여하고, 임차인은 그 보관함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</u></p> <p><b>제2조 보관대상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에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은행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, 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<u>임차인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 보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<b>제3조 계약기간</b></p> <p><u>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만기 도래 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</u></p> <p><b>제4조 인감·서명 등 신고</b></p> <p><u>임차인은 대여금고 이용을 위하여 인감(또는 서명)을 신고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려고</u></p>	<p>(구. 하나은행 통합내규 준용)</p> 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

<p>② <u>예비용 열쇠는 은행직원이 보는데서 봉투에 넣고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봉인하여 은행에 보관한다. 다만, 거래처가 예비용 열쇠를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용 열쇠를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은행이 화재, 천재지변, 법관이 발부한 영장,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및 대여금고 수리, 기타 은행사정에 따라 부득이 대여금고를 열어야 할 때는 예비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</u></p>	<p><u>할 때는 대리인도 인감(또는 서명)을 신고해야 합니다.</u></p>	
<p><b>제5조 대여금고의 이용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, 서명,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이용절차를 마치고 거래처용 열쇠, 카드,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한다.</u></p> <p>② <u>거래처는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소홀히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u></p>	<p><b>제5조 열쇠의 보관 및 사용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 열쇠는 임차인용(예비용 포함 2개)과 은행용으로 구분됩니다.</u></p> <p>② <u>임차인용 열쇠(예비용 포함 2개)는 임차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그 관리를 은행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.</u></p>	<p>(통합내규와 일치_카드 문구 삭제)</p>
<p><b>제6조 이용시간</b></p> <p><u>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6조 대여금고의 이용</b></p> <p>① <u>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(또는 지문)를 사용한다. 단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, 지문인식 대여금고는 최초 약정 후 별도의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소홀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③ <u>은행은 임차인의 요청이나 법적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대여금고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(통합내규와 일치)</p>
<p><b>제7조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등</b></p> <p>① <u>계약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처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때, 은행은 거래처에 사전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,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처분방법에</u></p>	<p><b>제7조 이용시간</b></p> <p><u>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(상동)</p>

<p><u>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.</p> <p>③ 은행은 영업점의 위치 변경, 폐쇄,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대여금고 전체를 이동, 교체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처에 사전 통지하고, 거래처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새로운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<b>제8조 보증금 및 수수료</b></p> <p>①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은행이 정한 대여금고 보증금을 내야하며,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</p> <p>② 제1항의 보증금은 대여금고 거래가 끝난 후 거래처가 내야 할 대여금고 관련 채무를 갚고 그 잔액을 내준다</p> <p><b>제9조 거래 해지사유</b>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</p> <p>1. 거래처가 해지를 신청한 때</p> <p>2. 거래처가 사망한 때</p> <p>3. 거래처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</p> <p>4. 거래처가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</p> <p>5.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때</p> <p>6. 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</p> <p>② 은행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거래처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.-</p> <p>③ 해지때 거래처는 이용열쇠를 은행에 돌려 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못한 때는 은행에 그 비용을 내야 한다.</p>	<p><b>제8조 대여금고의 임의열람</b></p> <p>① 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</p> <p>2. 대여금고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</p> <p>3. 기타 금고의 수리와 변경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② 제 ①항의 각 호에 의해 임의 열람된 금고의 물품은 규정에 의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9조 보증금</b></p> <p>①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은행이 정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, 이 때 예치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② 제 ①항의 보증금은 대여금고 거래 종료시 임차인이 내야 할 대여금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.</p>	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제 10조 해지때 수수료 계산 (2011.2.1 삭제)**

**제10조 거래 해지사유**

(상동)

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임차인이 해지를 신청한 때
2. 임차인이 사망한 때
3. 법인 또는 단체인 임차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때
4.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
5. 은행이 통지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때
6. 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금고의 이전, 교체 등으로 부득이 거래 해지가 필요한 때

② 은행이 제①항 4호 및 6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은행은 해지일 전 영업일까지 임차인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③ 은행이 임차인이 신고한 주소로 서면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
④ 해지 시 임차인은 이용열쇠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쇠 및 자물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**제 11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**

**제11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**

(상동)

①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, 도난, 손상하거나, 신고한 사항을 바꿀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

② 거래처가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, 도난 손상하여 대여금고 자물쇠와 열쇠를 바꿀 때 그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.

① 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은행은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임차인의 승인 또는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은행의 규정에 의해 보관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

② 제 ①항에 별도 보관 후 은행이 보관물품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경우 공탁,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,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에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<p><b>제 12조 대여.양도 금지</b>  <u>대여금고의 이용권리는 대여.양도할 수 없다.</u></p> <p><b>제 13조 면책</b>  <u>① 신고한 인감, 서명,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주의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개문 등 기타취급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열쇠에 대하여도 은행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</u>  <u>② 화재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래처에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  <u>③ 거래처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거래처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 번호(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)로 하며, 거래처가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.</u>  <u>다만, 거래처가 은행과 예금, 대출 기타 은행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신고내용은 본 대여금고 거래와 관련한 신고로 간주한다.</u></p> <p><b>제 14조 준용</b></p>	<p><u>③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후 은행은 남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.</u>  <u>④ 제 ①항,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</u></p> <p><b>제 12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</b>  <u>① 임차인은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, 도난, 손상하거나 연락처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</u>  <u>② 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 번호로 하며,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 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 지지 않습니다.</u>  <u>③ 임차인이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, 도난, 손상하여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<b>제 13조 대여.양도 금지</b>  <u>대여금고 이용에 대한 권리는 대여,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<b>제 14조 면책</b></p>	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 <p>(상동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<u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을 준용한다.</u></p>	<p><u>①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(예비용열쇠 포함)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하게하여 발생한 사고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 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 및 지문인식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</u></p> <p><u>②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<u>제 15조 준용</u></p> <p><u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u></p>	<p><b>(통합내규와 일치 및 구행명 삭제)</b>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